

부산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68114 판결 [점유회수 등 청구의 소]

---

##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김서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9. 20.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가단301964 판결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구거 1,195㎡를 인도하고, 1,309,000원 및 2022. 6.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6,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9,000원 및 2022. 6. 1.부터 밀양시 C 구거 1,195㎡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6,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망 E은 원고와 혼인하였다가 1981. 4. 15. 이혼한 사람으로, 밀양시 G 임야 3,553㎡(위 임야는 1989년경 G 임야 2,127㎡, H 임야 237㎡, I 임야 611㎡, J 임야 429㎡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주변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E은 이 사건 주변 토지 매수와 아울러 그 무렵 밀양시 K 하천 2,275㎡(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에 관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주변 토지 및 이 사건 하천을 비롯하여, 그와 연접한 D 소유의 밀양시 C 구거 1,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어장의 일부로서 점유사용해왔다. 위 각 토지 및 하천의 위치는 별지 그림과 같다.

다. 원고는 1992. 10. 26. 이 사건 주변 토지 중 H 임야를 영업소 소재지로 하여 ‘L’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양어장 부지와 그 지상건물에서 식당 영업을 해오다가, 2020년경 폐업하였다. 원고는 위 식당 폐업 이후부터는 작물경작, 물건적치, 관정사용 등의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M 임의경매절차에서 2021년경 이 사건 주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경락받았다. 피고가 2021. 4.경 이 사건 하천 입구에 쇠사슬을, 2021. 6.경 이 사건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독길에 철조망을 설치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11, 19호증의 각 기재, 갑 7 내지 10호증, 갑 12 내지 15호증, 을 1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2. 점유회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204조 제1항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21. 6.경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이던 원고의 손자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인도받아 그 점유를 승계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일부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원고는 F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20, 21호증의 각 기재, 갑 20호증의 영상 및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는 1992. 10. 28.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와 망 E의 자녀 망 N, 망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망 E과 이혼한 이후에도 이 사건 주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서 그 명의로 영업신고를 마치고 장기간 식당을 운영해왔던 점, 원고는 식당 폐업 이후로 그 집기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적치하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원고는 2021. 5. 19. 피고에게 ‘내일 개밥 주러 가는데 지나가도 될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는 ‘6월은 출입을 금지 시키겠습니다’라고 회신하였던 점, 피고는 2021. 6. 1. 원고에게 ‘1주일 이상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와 짐을 옮겨가지 않았네요’라고 연락을 취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기간, 점유의 방식, 원고와 망 E, 망 N, F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6.경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점유침탈로 인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침탈일인 2021. 6. 1.부터 2022. 5.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인 1,309,000원 및 2022. 6.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6,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204조 제1항),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보호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에 그치는 것이고 점유자에 대한 배타적 이익의 귀속을 정당화하는 법적 지위가 될 수 없으므로, 점유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 기타 법률의 규정에 기하여 수취의 권한이 있는 이익에 관해서만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이창갑의 소유이고, 달리 원고에게 물권이나 계약상 지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9138 판결은 유치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점유를 이전받은 점유자에 대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원고의 점유회수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신, 판사 유현영, 판사 서호원

별지



